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16호 2015. 09. 21.(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9.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좌로95번길 6외 2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9. 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9-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6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35-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30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32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6-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길 4-10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6-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길 4-8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54-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길 55-63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1-28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28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31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안길 12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 31 (공촌동)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7-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27-1 (심곡동, 동주타운)	2009-09-22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1-15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5-6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1-8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5-8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3-1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29 (금곡동, 우방구내식당)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6-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8-1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839번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6-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8-3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839번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8-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94 (오류동, 공영산업(주))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1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1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9-19 (연희동)	2011-06-30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586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0-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15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7-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29번길 19-7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10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12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0-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6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7-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7번길 1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11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5번길 2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3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34 (백석동, 아라베이스볼파크)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9-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경서동 73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55번길 6-16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69번길 3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석남동 569-2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7-1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7-2 (석남동)	건물군 분할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오류동 41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2-49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2-51 (오류동)	건물군 분할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행정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9.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화로 253-6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9-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78-3	<u>봉화로</u> 253-6	2015.09.09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79-4	<u>봉화로</u> 253-5	2015.09.09	건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79-18	<u>봉화로</u> 247	2015.09.09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규 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칙 일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제22조 제2항)
 -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안 제2조 ~ 제23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감사실)에

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73) 또는 Fax (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규 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칙 일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제22조 제2항)
 -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안 제2조 ~ 제23조)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의”를 “각 목의”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을 “구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과”를 “부동산 등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품등”을 “금품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품등”을 “금품 등 ”으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품 등”을 “금품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를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금품등을”을 “금품 등을”으로, 제21조제2항 중 “금품등이”를 “금품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를 “공무원 신규 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게”로 한다.

제2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 ----- ----- -----.
가.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u>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u> 」 ----- ----- ----- -----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u>인천광역시서구</u> 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u> ----- -----
사. ~ 타. (생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2. ----- ----- ----- -----

②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투자)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 5. (생략)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

② -----

부동산 등과 -----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금품 등 -----
-----.

----- 제외한다.

1. -----
----- 따라 ----- 금품 등

2. ~ 5. (현행과 같음)

6. -----

----- 금품 등

② -----

-----.

-----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금품 등

4. -----

----- 금품 등

③ -----

----- 금품 등 -----
-----.

④ -----

----- 금품 등 -----
-----.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 금품 등

----- 금품 등 -----
-----.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생략)
- 3.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
속 기관장(부서장) 명의로 지
급되는 경 조사 관련 금품등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
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
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구청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
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
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
고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

- 1. -----
----- 금품 등
- 2. (현행과 같음)
- 3. -----

----- 금품
등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금품 등을 -----

----- 금품 등을 -----

② -----
----- 금품 등이 -----

③ -----
----- 따

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2조(교육)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신규 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 범위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지침 발췌 (국민원익위원회)

□ 주요 내용

○ 공직 신규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 정립

▶ (신규임용) 공직자 행동강령 등 초심자용 소양교육, 교육 후 청렴서약

※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승진예정)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청렴교육 반영

※ 청렴교육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운영, 필수이수과목(5시간)에 포함

기 관	청렴교육 이수제 적용 승진예정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4급 승진예정자 및 5급 승진예정자
광역(교육청 포함)	5급 승진예정자
기초자치단체	5급 승진예정자
공직유관단체	부장급 승진예정자

▶ (고위직진입) 청렴리더십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함양

※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청렴교육 이수제도 도입여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